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시스템으로 확대·고도화 하게 됨에 따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하면서 각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재정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전자대금청구 등 대국민 서비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각 시스템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함(안 제3조)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방재정분야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데이터기반 지방재정 운용 원칙을 밝힘.(안 제4조)

2) 표준화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자료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지방재정통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재정점검 및 재정분석
등을 수행함.(안 제7조)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
정공시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함.(안 제8조)

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대국민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함.

1) 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통한 청구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지방재정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회계업무 표준화(안 제11조)와 회계
문서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제정안 별첨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지정,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스템을 연계한 전체시스템을 말한다.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호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또는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방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지방재정분석과 지방재정에 관한 점검·진단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지방재정공시시스템”이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하여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 등을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의 지정) 제2조제1호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법 제96조의2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한다.

제4조(데이터 기반의 지방재정 운용)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방재정시스템으로 수집하는 재정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자료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예산
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
3. 법 제54조에 따라 보고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통합재정통계
5.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하는 재정공시 내용.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금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
7.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하는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의2 또는 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
9. 그밖에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6조(지방재정통계의 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와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과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연계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기관·출연기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재정통계의 검증, 분석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등을 위한 재정정보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 각호에 따라 수집한 재정정보와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 제4조 제7호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재정공시시스템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된 내용을 분석·평

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0조의2제2항의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공시시스템과 법 제96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를 보유한 관계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시스템이 처리하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주민이 제안하는 예산사업 공모 및 선정 결과의 공고
2. 설문조사 및 투표
3. 그밖에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방법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0조(전자대금청구시스템의 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대금 청구권자”라 한다)가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대가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른 일반지출 또는 일상경비의 지급으로서 채권자등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비. 이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의 선금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대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정하는 경비

② 대금 청구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전자적 대금청구서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금 청구권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대금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업무의 표준화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필요한 재정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한 각종 회계서류의 분류번호·서식 및 사무절차(이하 ‘사무절차 등’이라 한

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표준화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절차 등을 재설계 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서류의 전자적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법」 제5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 전자적 보관소(이하 ‘전자문서고’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고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징수부·지출원인행위부·지출부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현금출납부와 물품출납부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전자문서고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징수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징수보고서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지출계산서

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출납계산서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금고가 「지방회계법」 제5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계표, 월계표 및 출납사무와 관련한 보고서.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금고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출납원 소관 장부 등의 검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고에 대하여 검사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계서류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